



인지세 납부 안내

부동산 분양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계약을 할 때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·첨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본세의 30%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.

※ 인지세를 계약 당사자간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은 납부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계약 당시 인지세를 납부하고 납부한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■ 납부 대상

-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(전매)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 대상
- 계약 당사자간에 서명을 할 때 계약서별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
- ※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

■ 납부 세액

| 과세문서 | 세액 | 수입인지가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부동산·선박·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| 기제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| 2만원 |
| | 기제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| 4만원 |
| | 기제금액이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| 7만원 |
| | 기제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| 15만원 |
| | 기제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| 35만원 |

온라인 이용방법

1. 전자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 또는 네이버 검색창 '전자수입인지' 검색
2.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→ 비회원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



3. 구매(납부정보 입력) ※ 00:30~22:00 동안 구입 가능

| 구분 | 내용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용도 | 인지세 납부 |
| 과세문서 종류 | 1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|
| 금액 | 150,000원 |
| 건수 | 1건 |



4. 출력 :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(재발행 불가)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5. 사업주체에 사본 제출 필수

오프라인 이용방법

1. 가까운 우체국·은행 방문(방문전 문의 요망)
2.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작성
※ 현금 수납만 가능 (신용카드 결제 불가)
3. 전자수입인지 발급완료
4. 사업주체에 사본제출 필수

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

| 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용도 | <input type="checkbox"/> 인지세 납부용 | <input type="checkbox"/> 행정수수료용 |
| 금액 | 대 수 | <input type="checkbox"/> 대량발급 |
| 구매자 정보 | 성명 (상호) | 주민(사업자) 등록번호 |
| 연락처 | <input type="checkbox"/> 종이수입인지 교환 | |

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

전자수입인지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우체국에서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.

1. 개인정보 제공받는자 : 우체국
2. 개인정보 제공목적 : 전자수입인지 발행·판매 및 판매업무처리
3. 제공대상 개인정보 : 성명, 주민(사업자)등록번호, 연락처

20 년 월 일 성명 (서명/인)

1. 구매자 정보는 「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」에 의거 수집함을 알려드립니다.
2. 용도는 인지세 납부용(예시 :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, 급전소비대차, 신용카드 회원신청서 등)과 행정수수료용(예시 : 기획재정부, 미래창조과학부, 발원행정처,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국회사무처 등)을 구분하여 선택합니다.
3. 구매자 정보는 전자수입인지를 직접 구매하는 자에 대한 인격사항을 기재합니다.
4. 대량발급 : 용도와 금액이 같은 대량(10,000매 미만)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 선택
※ 단, 대량발급을 선택한 경우 신청 후 다음 영업일에 발급 가능

「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」

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호로 구분한다.

1.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: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
 2.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: 전자문서에 첨부하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
- ※ 예)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전자문서 등
※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방법 : 국세청 고시 제2017-11호 참조